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80
----------	-------

제출년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 및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 사항 반영  
나. 고독사의 원인을 1인 가구의 증가로 국한시킴으로써 1인 가구의 부정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기에 주요대상을 조정함으로써 고독사 문제를 다방면으로 포괄

##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내용 반영 및 대상의 구체화 (안 제1조)

1. (현 행)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개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2. (현 행) 사회적 고립가구의

(개정안) 구민의

나. ‘1인 가구’를 정의하는 호 삭제 (안 제2조)

(현 행)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개정안) 삭 제

다. 서울시 조례 개정 사항 반영하여 지원 사업 추가 (안 제8조)

(현 행) 11개 사업

(개정안) 12개 사업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추가)

라. 시행규칙 관련 조문 삭제 (제11조)

(현 행)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삭 제

마. 상위법 인용 용어 정비(안 제1조, 제3조~제5조, 제7조, 제9조~제10조)

###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2. 7. 28. ~ 8. 17. (제출된 의견 없음)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5)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6) 제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 의결(2022. 8.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외·단절된 1인 가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으로, “사회적 고립가구”를 “구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고독사”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으로, “위험으로부터”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하여”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방을”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예방”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예방”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인 가구 중 경제적”을 “경제

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인 가구”를 “가구”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11.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중 “안전망 구축”을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0조 중 “예방사업”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u>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u></p> <p>2. ~ 5. (생략)</p> <p>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4조(<u>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u>) 고독사 <u>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u></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마포구민</u>-----</p> <p>-----</p> <p>----- <u>구민</u>-----</p> <p>-----.</p> <p>제2조(정의) -----</p> <p>-----.</p> <p><u>&lt;삭 제&gt;</u></p> <p>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제3조(책무) ① -----</p> <p>----- <u>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u> -----</p> <p>-----</p> <p>----- <u>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u>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u>다른 조례와의 관계</u>) ----</p> <p>---- <u>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u></p>

· 지원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 3. (생략)
4.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생략)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

안전망 확충에 관하여 -----  
-----  
-----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  
----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  
-----.

1. ----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
2. · 3. (현행과 같음)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  
-----
5. (현행과 같음)
6. -----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

제7조(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  
-----.

1. 경제적-----  
-----  
-----
2. ----- 가  
구 -----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4. (생략)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 ~ 9. (생략)

10. 일자리 알선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신설>

② (생략)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  
---

3.·4.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 ① -----  
-----  
사업-----.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 10. (현행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삭제>

11.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 및 홍보) -----  
-----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위해 -----  
-----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  
-----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

제11조 <삭 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김상규
연 락 처	02-3153-8846